시 민

주무관	평생교육과장	교육협력국장	행정1부시장	서울특별시장
박용성	***김정호***	***윤종장***	***정효성***	*08/27* ***박원순***
협 조	*기획조정실장*			***류경기***
	조직담당관			***김용남***
	재정담당관			***김갑수***
	평생교육기획팀장			***송인상***

문서번호	평생교육과-7563
결재일자	2014.8.27.
공개여부	비공개
방침번호	서울특별시장 방침 제229호

함께 만드는 서울, 함께 누리는 서울

희망서울 마을공동체로 함께 잘사는 서울

- 서울시 평생교육정책 추진 컨트롤타워 -

「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」 법인설립 추진계획(안)

2014. 8.

교 육 협 력 국

(평 생 교 육 과)

희망서울

서울특별시

사전 검토항목

:::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'무 ■' 표시하시기 바랍니다.

검토항목	검 토 여 부 (■ 표시)		
시민참여 고려사항	● 시 민 :	유 □ ( )	무 ■
	● 이 해 당 사 자 :	유 □ ( )	무 ■
	● 전 문 가 :	유 □ ( )	무 ■
	● 옴 브 즈 만 :	유 □ ( )	무 ■
법령 및 기타 고려사항	● 법 령 규 정 :	교통 □ 환경 □ 재해 □	
		기타 ■ (평생교육법,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, 민법)	무 □
	● 기 타 사 항 :	고용효과 □ 노동인지 □ 균형인지 □	
		홍보 □ 취약계층 □ 성인지 □ 빗물순환 □	
		장애인 □ 디자인 □ 갈등발생 가능성 □	
		유지관리 비용 □ 바른 우리말 □	무 ■
타자원의 활용	● 중 앙 부 처 :	유 □ ( )	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	유 □ ( )	무 ■
	● 기 업 :	유 □ ( )	무 ■
관계기관 및 단체 협의	● 관 계 기 관 :	유 □ ( )	무 ■
	● 민 간 단 체 :	유 □ ( )	무 ■
	● 시 산 하 기 관 :	유 ■ 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	무 □
언론홍보 계획	● 홍 보 계 획 :	보도자료 □ 기자설명회 □ 현장설명회 □ 기획보도 □	
		기고문 □ 기타 □ ( ) 없음 ■	

「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」 법인설립 추진계획(안)

현재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운영중인 평생교육진흥원의 평생교육정책 추진의 허브기능 강화 등을 위해 별도법인으로 전환하고자 함

Ⅰ 추진근거 및 방향

❑ 추진근거

○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○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 (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

○ 「민법」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❑ 추진방향

○ 서울시 평생교육진흥 및 확산 등의 추진역량 제고를 위해 조기 법인화 추진
- 시·진흥원과 설립 추진 TF 구성 등 협업체계 마련

○ 유능한 외부 인재를 적극 충원하여 진흥원 운영 활성화 도모
-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충원을 추진하되, 사업규모에 따라 단계적 확대

○ 진흥원을 중심으로 서울시 평생교육 분야 생태계 구축 등 추진체계 강화
- 법인운영 자율성 최대한 허용(시는 최소한의 관리·감독기능 수행)

〈 그간의 추진경위 〉

◦ **「서울시 평생교육진흥원」 개원 ('14.4.3)** ※ 원장은 서울연구원장이 겸임
- 서울연구원의 부설기관으로 설립(개원일로부터 3년 운영기관으로 지정)

◦ **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 설립 관련 국비지원 대상 선정 ('14.6.12, 1억원)**

Ⅱ 법인설립 개요

○ 명　　칭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

○ 설립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 등

○ 설립형태 : 재단법인

○ 설립시기 : '15. 1월 중(예정)

○ 주요업무

-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, 기초조사 등 연구 기능
-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, 프로그램 개발·운영·지원 등

○ 추진절차

1. 설립 추진 TF 운영	2. 타당성 용역·심의	3. 조례 개정	4. 법인설립 준비 및 출범
• 법인설립 필요 사항 - 조례개정(안) 마련 - 정관(안) 마련 - 타당성 연구용역 등	• 법인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(8~10월) • 출자·출연기관 심의위원회 심의(11월, 재정담당관) • 안행부에 설립 신고	• 「서울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개정 • 입법예고 •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• 시의회 조례안 심의·의결	•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-정관 제정, 이사회 구성 등 • 이사회 개최 • 진흥원장 채용(공개) • 법인 등기 및 공고(시보) • 출범
('14.8~개원시)	('14.8~11월)	('14.8~11월)	('14.9월~'15.1월중)

Ⅲ 추진계획(안)

❑ 「법인설립 추진 TF」 구성·운영 ('14. 8~개원시 까지)

○ 구　성 : 평생교육과장(팀장), 관계공무원 및 진흥원 연구원 등

○ 기　능 : 법인설립 행정 사항 지원, 타당성 연구용역 및 정관(안) 마련 등

※ 세부 추진내용은 별도 계획 수립·시행

❑ 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개정 ('14.8~11월)

○ 평생교육진흥원 법인설립 및 지원근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

※ 학점은행제 시행, 학습장 운영 및 기타 평생교육 진흥 관련 근거 규정 병행 정비

○ 주요내용 (제1장 총칙,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, 4장 보칙)

- 조례개정 조문(안) : 제1장 2조, 제3장 제17조~제33조, 제4장 제34조~제36조

〈 조례개정(안) 주요내용 〉

구 분		개 정 안
1장	정의(안 제 2조)	◦ “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”은 시장이 평생교육 진흥을 위하여 설립한 평생교육진흥원을 말함
3장	설립(안 제17조)	◦ 진흥원은 **법인으로 설립**
	사업(안 제18조)	◦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, 프로그램 개발·운영 지원 등
	임원(안 제20조)	◦ **임기가 각 3년인 이사장 및 원장**을 포함한 **이사와 감사**(이사장, 이사, 감사는 비상근) ◦ **이사장과 원장은 시장이 임면**(임원 정수,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 등에 사항은 정관에 규정)
	출연금(안 제24조)	◦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**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금 교부**
	수익사업(안 제24조)	◦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시장의 승인을 받아 **수익사업 가능**
4장	이용료 등(안 제34조)	◦ **서울시 운영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** 이용자로부터 **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**
	교육과정 개설 등(안 제35조)	◦ **은평학습장 등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습장**에서 학점은행제, 시민교양과정 등 **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 개설·운영 근거 조항 규정**

❑ 「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」 추진 (’14.8~11월)

○ 추진근거 :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○ 용 역 명 :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

○ 용역기관 : 서울연구원 또는 제3의 전문기관

○ 주요내용(안)

- 진흥원 설립에 대한 정책목표 설정, 지역적 여건 및 현황분석
- 타 시도 진흥원 설립·운영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
-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분석
  - 투자 및 사업 적정성,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,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, 지역주민 등의 의견제시 방법과 절차,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, 조직 및 인력수요 판단 등
- 진흥원 단계적 발전방안, 효율적 운영 방안

※ 출자·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심의(11월 예정, 재정담당관)

❑ 「법인설립 준비위원회」 구성·운영 ('14.9~법인설립시)

○ 선정방법 : 평생교육 분야 전문가 등 각 분야 민간 전문가 중 시장이 위촉

○ 구성(안) : 12명 내외(위원장 포함)

구 분	분 야	위 촉 기 준
위촉직(10명)	학 계 (4명)	▸ 평생교육분야 전공 교수 등
	현장활동가 (3명)	▸ 평생학습관, 시민단체, 마을공동체 등 평생교육 현장활동가
	전문기관·단체(3명)	▸ 평생교육 관련 전문기관 및 민간협회 등 관계자
당연직(2명)	서울시 (1명)	▸ 교육협력국장
	시 교육청 (1명)	▸ 평생진로교육국장

※ 향후, 이사회 구성시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위원 선별 승계

○ 주요기능 :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제반 사항 이행

- 진흥원 설립취지문 및 정관 작성
- 이사회 임원 후보 추천 및 선임
- 직제·복무 등 제규정(안) 방향제시
- 재단법인허가 신청, 설립등기 등 기타 법인설립 준비에 관한 사무

❑ 사무공간 확보 : 예산 및 법인 개원시기를 고려, 확보 추진

○ 필요공간(495㎡) : 사무실, 원장실, 회의실, 세미나실 등

○ 사무공간 확보방안 : 시유건물 활용(또는 별도 건물 임대)

- 예산절약 등 제반상황을 고려, 시유건물 활용 추진 : SBA 이전공간, 서울혁신파크 등
- 별도 건물 임대의 경우, 출범과 동시에 입주 가능하나, 예산 추가소요 필요

※ (예시) 일부 실국 이전(코오롱빌딩) : 495㎡(150평) 임차시 1,230백만원 소요(연간)
⇒ 보증금 1,056,000천원, 임대료(월) 13,200천원, 관리비(월) 1,320천원

<SBA 본사 이전공간, 서울혁신파크 현황>

◦ **서울혁신파크(은평구 불광역 부근)**

▸ 즉시 가능공간 : 서울혁신파크 8동 4층(660㎡) / '16년 50+ 프라자 입주예정

▸ 리모델링 후 입주가능공간('14년 계약기간 만료) : 20개 기관(녹번우편취급국, 특수임무유공자회 등)

◦ **SBA 본사 이전 공간(강남구 학여울역 부근)**

▸ SBA 교육센터 입주 예정(3층, '15년), 제 2시민청 조성 계획 검토(1·2층)

Ⅳ 조직 및 인력구성(안)

❑ 기본방향

○ 타 법인설립 사례를 감안, 최소 인력으로 출범하되 향후 단계별 확대

❑ 조　　직 : 1원 3팀 (기획팀, 운영팀, 지원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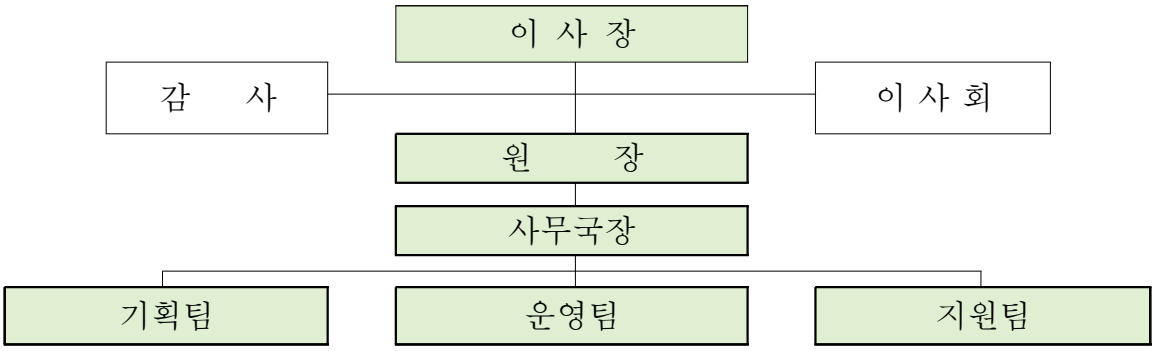

○ 분장사항

- 기획팀 : 정책개발 및 연구, 포럼, 네트워크 등
- 운영팀 : 프로그램 개발·운영, 통계 및 실태조사, 진흥사업 등
- 지원팀 : 행정지원, 예산, 회계 등

❑ 인　　력 : 15명 (원장 1, 직원 14)

○ 원 장 : 3년(연임가능)

- 평생교육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선발(채용 시기 : '14년 11월)

※ 서울연구원 정관개정 필요(평생교육진흥원장 겸직규정, 정관 제20조의3, '14. 10)

○ 직 원 :14명(사무국장 1, 팀장 3, 직원 9, 시 파견 1)

〈 타 시·도 재단법인 진흥원(설립시) 현황 〉

구 분	설립일	인　력	조 직	소요예산 (기본재산)	비고
경기	'11.12.28	13명 (원장1, 팀장2, 직원10)	1원 2팀	1,035백만원 (500)	현재 27명
대전	'11. 7.28	12명 (원장1, 팀장3, 직원8)	1원 3팀	1,000백만원 (300)	현재 43명

Ⅴ 행정사항

❑ 소요예산 : 2,088백만원('15년 본예산안)

○ 기본재산 : 100백만원(재단법인 설립기금) ※ 경기도 500, 대전광역시 300

○ 운영예산 : 1,746백만원(인건비, 운영비, 사업비 등)

○ 시 설 비 : 242백만원(설계 및 개보수 비용)

(단위 : 천원)

구 분		예산액	예 산 내 역	비고
출연금	재단설립 기본재산	100,000	◦ 재단설립 기본재산	
	인건비	698,476	◦ 연봉급, 수당, 복리후생비, 성과급 등	
	운영비	395,190	◦ 기관운영비, 법정부담금 여비, 사무관리비, 행사운영비, 업무관리시스템 구축 등	
	사업비	514,346 (×80,000)	◦ 거버넌스 구축, 교육·컨설팅, 프로그램 개발, 포럼, 네트워크사업, 기획사업 등	
	물품및자산취득비	90,000	◦ 집기(의자, 책상, 책장 등), 컴퓨터, 복사기 등	
	공공운영비	47,672	◦ 공공요금(전기,도시가스 등), 무인경비 용역비 등	
시설비	설계 및 개보수비용	242,100	◦ 재단 사무실 설계 및 보수비용	

※ 재단설립 기본재산의 경우, 주무관청(서울시교육청) 협의 과정에서 증액 등 변동 가능

❑ 추진부서

○ 법인설립 총괄 : 교육협력국 평생교육과

- 법인설립 기본·실행계획 수립, 「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 개정
-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구성·운영

○ 법인설립 실무 : 법인설립 추진 TF (평생교육과, 진흥원 등)

- 정관(안) 마련, 설립타당성 연구용역, 진흥원 사무실 공간 확보 등
- 직제, 복무 등 규정 마련, 임원(이사, 감사 등) 구성, 임시 이사회 개최
- 진흥원장 및 직원 채용 절차(공고, 접수, 면접 등) 추진 등

○ '15년도 진흥원 출연금(기본·운영예산) 예산 반영 : 예산담당관

Ⅵ 추진일정

○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」법인설립 방침 수립 : '14. 8월

※ 법인설립 실행계획 수립('14. 9월) : 법인설립위원회 구성, 이사회 개최 등

○ 출연기관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 : '14. 8~10월

- 진흥원 출연기관 설립에 대한 타당성 분석, 정책목표 설정, 단계적 발전방안 등

○「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」개정 : '14. 8~11월

○ 법인설립 준비위원회 및 이사회 구성 등 : '14. 9~12월

- 정관제정, 이사·감사 등 임원 선임, 법원등기 등

○ 출자·출연기관 설립 심의(재정담당관) : '14. 11월 중

○ 사무공간 확보, 진흥원장 공개채용 : '14. 8~12월

○ 출 범 : '15. 1월 중

붙임 : 1. 법인설립 추진근거 관계법령 1부.

2. 일부개정조례(안) 1부.

붙임 1 추진근거 관계법령

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4조

(지방자치단체의 출자·출연과 대상 사업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(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)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「상법」에 따른 주식회사나 「민법」 또는 「공익법인의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.

1. 문화, 예술, 장학(장학), 체육,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
2.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

② 생 략

③ 출자·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1. 설립 목적
2. 주요 업무와 사업
3.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

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7조

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검토와 설립 전 협의 등)

① 지방자치단체는 출자·출연 기관(제2항제2호에 따라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출자·출연 기관을 포함한다)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거쳐 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·운영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미리 검토하고,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.

1. 지방자치단체의 투자 및 사업의 적정성
2. 주민복리에 미치는 효과
3. 그 밖에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
② 지방자치단체가 출자·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제4조제3항에 따른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시·도지사는 안전행정부장관과,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관할 시·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협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.

1. 생 략

2. 그 밖에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기관을 설립하려는 경우

❑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제정(안) 제8조 (출자·출연 기관의 설립 시의 협의 생략 기준 등)

①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라 출자·출연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자금 또는 출연금이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·도지사와 출자·출연 기관이 설립 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다.

1. 안전행정부장관과 설립 전 협의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

가. 출자기관 : 5억원

나. 출연기관 : 2억원

❑ 「평생교육법」 제20조 제1항 (시·도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)

① 시·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할 수 있다.

② 시·도평생교육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

1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회 및 정보의 제공
2. 평생교육 상담
3. 평생교육프로그램 운영
4. 해당 지역의 평생교육기관간 연계체제 구축
5. 그 밖에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시·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❑ 「민법」 제32조 (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)

학술, 종교, 자선, 기예,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.

붙임 2 일부개정조례(안)

❑ 제1장(총칙), 제2장(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) 및 제4장(보칙) 일부개정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설치 또는 지정·운영하는”을 “설립한”으로 한다.

제17조제1항 중 “평생교육진흥을”을 “평생교육진흥과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”로, “설치 또는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”를 “설립할 수 있다”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.

제18조의 제목 “(위탁운영)”을 “(사업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진흥원은 서울시 평생교육진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.

1. 평생교육관련 정책개발 및 연구
2. 평생교육진흥프로그램 개발·운영 및 지원
3. 자치구와 평생교육기관 간의 연계체계 구축

4. 평생교육 관계자 연수

5.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학습상담

6. 학습동아리 육성·활동지원

7. 소외계층에 대한 평생교육 참여 지원

8.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생학습 진흥사업 지원

9. 자치구 및 평생교육기관 등에 대한 평가 및 지도

10. 평생학습축제 등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확산을 위한 사업

11. 시장이 평생교육진흥을 위하여 위탁하는 사업

12. 그 밖에 진흥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

제19조의 제목 “(지정운영)”을 “(정관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진흥원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, 명칭 및 주된 사무소 소재지

2. 사업 및 그 수행에 관한 사항

3.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

4. 이사회에 관한 사항

5. 직제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6.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

7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
8. 해산에 관한 사항

9. 그 밖에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

② 진흥원의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제20조의 제목 “(업무)”를 “(임원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진흥원의 임원은 이사장 및 원장을 포함한 이사와 감사를 둔다.

② 이사장과 원장은 각각 시장이 임면한다.

③ 이사장과 원장의 임기는 각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④ 임원의 정수, 이사 및 감사의 임면과 임기에 관한 사항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⑤ 이사장, 이사 및 감사는 비상근으로 하고 원장은 상근으로 한다.

제21조의 제목 “(조직 및 시설)”을 “(임원의 직무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①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며, 진흥원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·감독한다.

② 감사는 진흥원의 회계 및 사무를 감사하며,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
제22조의 제목 “(운영경비)”를 “(이사회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진흥원의 사업수행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두며,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.

②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사회를 소집하고, 그 의장이 된다.

③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④ 이사회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23조 및 제24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3조(직원) 진흥원의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원장이 임면한다.

제24조(출연금) 시장은 진흥원의 설립·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에 출연금을 교부할 수 있다.

제25조의 제목 “(수익금 운영)”을 “(운영재원 등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.

제2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.

1. 시의 출연금

2. 정부의 지원금

3. 대학, 기업 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및 기부금

4.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영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

제26조의 제목 “(사업년도)”를 “(사업연도)”로 하고, 같은 조 중 “시의 일반회계”를 “시”로 한다.

제27조의 제목 “(위탁계약 해지 및 지정 취소)”를 “(사업계획서 등의 제출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② 제1항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③ 진흥원은 사업연도마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산서류를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1. 세입·세출에 관한 예산·결산보고서 및 발생주의·복식부기에 의한 재무회계 결산서

2. 공인회계사가 작성한 제1호의 예산·결산보고에 대한 검토의견 및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감사보고서

3. 진흥원의 운영 및 서비스 등을 평가한 경영평가서

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28조(수익사업) 진흥원은 설립목적의 범위 안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. 이 경우 사전에 수익사업의 대상 등에 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제29조의 제목 “(운영규정)”을 “(사업의 위탁 및 자료제공)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된 사무를 위탁하는 때에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경우 또는 그 밖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무를 다른 기관에 우선하여 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② 진흥원은 시와 그 산하 기관에 대하여 진흥원의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

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원에 제공된 자료는 사업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.

제30조 앞의 “제4장 보칙”을 삭제한다.

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30조(비밀 엄수의 의무) 진흥원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

제31조의 제목 “(보조금 지원 및 정산)”을 “(지도·감독 및 평가)”로 하고,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에 진흥원의 운영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·검사하게 할 수 있다.

② 원장은 시장의 자료제출 요구에 성실하게 응하여야 한다.

③ 시장은 진흥원이 업무를 게을리 하거나 부당하게 처리하는 경우 이의 시정을 명령할 수 있으며, 필요한 경우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.

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이 직접 시정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문서로서 통보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.

⑤ 시장은 진흥원 및 평생교육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.

제32조제1항 중 "「지방공무원법」 제30조의4"를 "관계 법령"으로 하고, "소속공무원"을 "소속 공무원"으로 한다.

제3장에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3조(운영규정) 진흥원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와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정한다.

제33조 다음에 장 번호 및 장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장 보칙

제4장에 제34조부터 제36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34조(이용료 등) ① 시장은 시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등에 참여하는 이용자로부터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을 받을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이용료 또는 수강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.

③ 시장은 평생교육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일부 프로그램의 운영을 무료로 할 수 있다.

제35조(교육과정 개설 등) ① 시장은 은평학습장, 시민청 등 서울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학습장에서 학점은행제 과정, 시민교양과정 등 시민이 요구하는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제36조(보조금 지원 및 정산) 평생교육진흥과 관련된 지원경비의 관리는「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」를 준용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① 이 조례 시행 전 운영하고 있는 “진흥원”은 제1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“진흥원” 설립일까지 제18조의 사업과 “진흥원” 설립에 관한 사무 등을 수행한다.

② 이 조례 시행 전 서울연구원 부설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“진흥원”은 이 조례의 개정에 따라 설립되는 “진흥원”의 원장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.

③ 이 조례 시행 전 운영하고 있는 “진흥원”에 채용된 직원은 제23조의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.

④ 이 조례 시행 전 “진흥원” 에 파견되어 있는 소속 공무원은 제34조의 개정규정에 의해 파견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.